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5-4

제출년월일: 1995. 2. 15

제 출 자: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현행 민원창구에서 제 증명 발급시 제 증명 민원서류의 인증과 수입증지 부착 및 소인을 각각 분리하여 처리함으로써 시간 및 인력이 낭비되어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를 사용 계기 1회 작동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능률적인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하며, 과학화된 행정장비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계기관리 책임공무원 및 수입금 관리 공무원 지정 (안 제5조의 2)
- 계기에 의하여 인영될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 규정 (안 제6조)
- 계기 사용에 의한 수수료 수입금 일일결산대장 서식 개정 (안 제21조)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수입증지에 의한수입)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수수료를 납부하게”를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게”로 하고, 제2항 제4호 “계기 인영번호”를 “계기고유 인영번호”로 한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 (계기관리 공무원의 지정) 구청장은 계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 본청은 계기사용 부서의 실·과장으로, 동은 사무장으로 하여금 책임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계기에 의하여 인영할 수입증지의 종류는 예외로 한다.

③계기에 의하여 인영될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구 본청은 계기관리부서 분임징수관 및 동은 수입금 출납원 책임하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 제1항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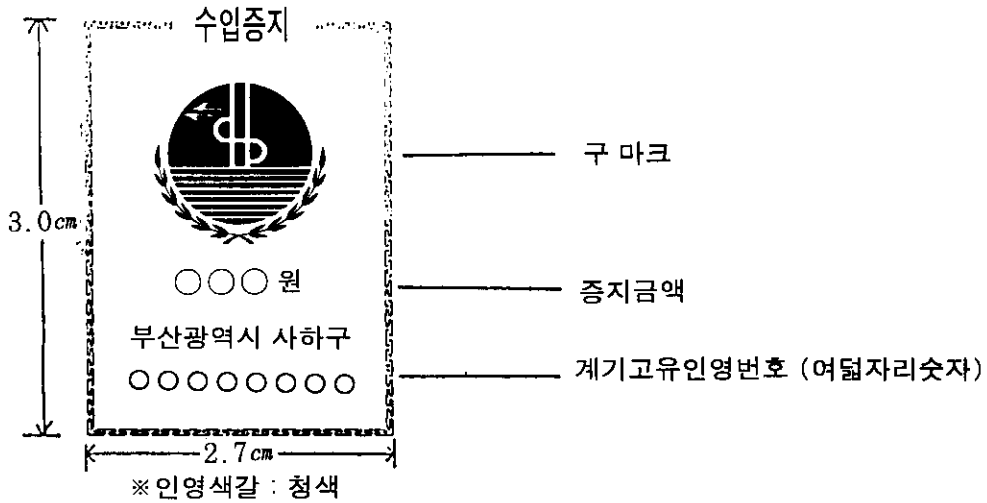
(별지 3) 및 (별지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계기인영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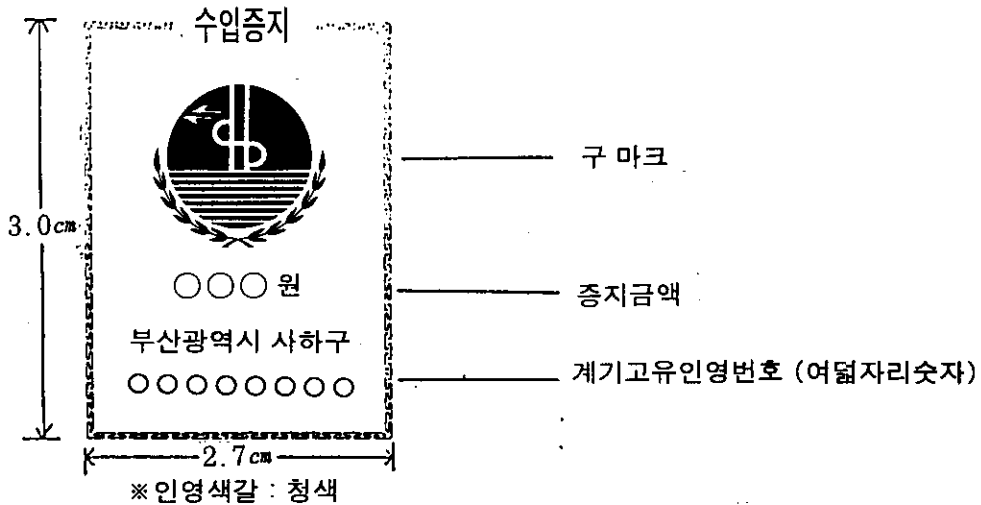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입증지 요금제기의 사용)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제기(이하 "제기"라 한다)에 의하여 <u>수수료를 납부하게</u> 할 수 있다.		제5조(수입증지 요금제기의 사용)①.....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② 제기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으로 부터 제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제기의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②.....	
1~3 (생략)		1-3(현행과 같음)	
4. <u>제기 인영번호</u>		4. <u>제기 고유 인영번호</u>	
(신설)		제5조의 2 (제기관리 공무원의 지정)구청장은 제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 본청은 제기사용부서의 실, 과장으로 동은 사무장으로 하여금 책임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6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신설)		단, 제기에 의하여 인영할 수입증지의 종류는 예외로 한다.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신설)		③제기에 의하여 인영될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현행	개정안
제21조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생략) ②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구 본청은 계기관리부서 분임징수관 및 동은 수입금 출납원 책임하에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 (증지의소인) ①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신설) (신 설) [별지제10호서식](별지와 같음)	제24조 (증지의 소인)①..... 다만,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 (별지 3) (별지와 같음) [별지제10호서식](별지와 같음)

(별표 3)

계기인영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현행〉
[별지제10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illegible]

조정카드는 1일 1매 원칙으로 한다.

〈개정안〉

[별지제10호서식]

제기사용 수수료 일일결산 대장

결	담당	계장	과장
재			

일
화
일

[illegible]